

# 지역사회협력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12. 28.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봉사, 교육,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,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본교 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사회봉사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.)이 된다. 단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지역사회 봉사, 교육, 협력 활동의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
- ② 지역사회 봉사, 교육, 협력 활동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지역사회 봉사, 교육, 협력 활동의 지원 및 실적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④ 지역사회 봉사, 교육, 협력 활동의 개선 및 보완 등 환류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④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8조(간사)** 간사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, 간사는 사회봉사단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3-0-39 지역사회협력위원회 규정

제9조(세부사항)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